

안전번호	제 5 호
심 의 년 월 일	2006. 6. 22. (제 16 회)

**연구관리전문기관  
운영효율화 방안(안)**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제 출 자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농 립 부 장 관 박홍수	산업자원부장관 정세균
	정보통신부장관 노준형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
	환 경 부 장 관 이치범	건설교통부장관 추병직
	해양수산부장관 김성진	기획예산처장관 변양균
제출년월일	2006. 6. 22.	

# 안 건 요 약

## 1. 추진배경

- 연구관리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들은 소관부처 R&D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기획·평가·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함으로써 국가R&D사업 관리의 효율성·전문성 제고에 기여하였음
- 그러나 현행 전문기관 운영체계와 관련하여서는 아직도 개선여지가 많은바, 이를 개선하여 국가R&D투자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 2. 현황 및 문제점

- '06년 5월 현재 9개 부처 산하에 10개 전문기관이 설립 또는 지정되어 운영중임
  - ※ 전문기관이 관리하는 R&D사업규모는 '05년 기준 약 4조3천억원으로, 정부R&D예산(77,996억원)의 약 55%에 해당
- 각 부처가 소관 R&D사업의 규모나 타 부처와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경쟁적으로 전문기관을 설립 또는 지정함에 따라 전체적인 R&D사업 관리의 효율성 저하가 우려됨
- 전문기관을 소관부처의 단순업무 지원기관으로 인식하여 전문적인 R&D사업 기획·평가·관리기관으로 발전을 유도할 부처차원의 지원이 부족함
- 전문기관별 R&D 관리체계와 절차 등이 상이하여 일선 연구 현장의 불편을 초래함

### 3. 전문기관 운영효율화 추진

#### ① 전문기관의 위상 제정립

- 전문기관에 대한 명확한 범위 설정을 위한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전문기관의 설립·지정시 과기장관회의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설립·지정절차를 마련함
- 전문기관의 당연직 이사로 혁신본부 관계자를 참여토록 함으로써 국가기술혁신방향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전문기관의 운영을 도모함

#### ② 전문기관의 역량 강화

- 전문기관의 기능 및 역할에 부합되도록 적정규모의 연구기획평가비 및 전문인력을 확보함
- 전문기관별 평가인력 D/B를 상호 연계·공유함으로써 평가인력 풀을 확대하는 한편, 평가인력에 대한 정보를 국가차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함

#### 【 전문기관의 평가인력 풀 현황 】

(’06.5월 기준, 단위: 명)

산업계	대 학	출연(연)	기 타	합 계
9,879	55,403	8,215	1,811	75,308

- 연구성과정보의 전문기관간 상호 연계·공유를 촉진하기 위해 표준성과항목, 표준관리양식 등을 마련하여 공동활용함
- 전문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기관평가 지표를 개발하여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평가에 반영

- 운영효율화를 위한 기관차원의 노력을 결집,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전문기관간 협의체**를 구성·운영함

### **[3] 전문기관의 고객 지향성 강화**

- 전문기관 공동으로 국가R&D사업 관련 정보에 관한 **종합 안내서**를 발간·배포하고, 국가R&D사업을 대학·출연(연), 민간기업 등 연구주체별로 구분하여 **합동설명회**를 개최함
- 연구자 등이 **일반정보를 사전에 등록**케 하고 전문기관들이 이를 **공동관리**하여 중복 서류제출 등의 불편을 해소함
- 과학재단 등에서 실시 중인 **전자협약제도를 확대** 실시하여 협약체결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서류제출 부담을 경감함

### **[4] R&D사업 관리능력 검증제도 도입**

- 국가R&D사업 추진 부처별로 소관 R&D사업의 기획·평가·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R&D사업 관리업무 수행 능력**을 검증하여 검증된 기관에 한하여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제도를 도입함

## **4. 향후 추진계획**

- '전문기관 운영효율화 방안'에 기초한 부처별·전문기관별 세부 실천계획 수립 및 추진('06.6~)
- 부처별·전문기관별 추진실적 점검('06.12)

# 연구관리전문기관 운영효율화 방안(안)

2006. 6. 22.

교육인적자원부      과   학   기   술   부  
농   립   자   부   산   업   자   원   부  
정   통   신   부   보   건   복   지   통   부  
환   경   산   보   건   교   통   산   처  
해   양   수   산   기   회   예   산   처

# 목 차

I. 개 요 .....	1
1. 추진배경 .....	1
2. 현    황 .....	2
3. 문 제 점 .....	5
II. 연구관리전문기관 운영효율화 추진 .....	12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	12
2. 세부 추진과제 .....	13
(1)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위상 재정립 .....	13
(2)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역량 강화 .....	15
(3) 연구관리전문기관의 고객 지향성 강화 .....	20
(4) R&D사업 관리능력 검증제도 도입 .....	23
III. 향후 추진계획 .....	24

# I. 개요

---

## 1. 추진배경

- 과학기술부 중심으로 추진되던 국가R&D사업이 1990년대 이후 추진주체가 다원화되고 투자규모가 확대됨
- 각 부처 R&D사업의 규모·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1992년 STEPI 국책연구사업단(과학기술부)을 필두로 하여 부처별로 연구관리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을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중임
- 전문기관들은 소관부처 R&D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기획·평가·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함으로써 그동안 국가 R&D사업 관리의 효율성·전문성 제고에 기여하였음
- 그러나 이들 전문기관들이 고도로 전문화된 R&D사업 관리기관으로서의 역량을 구비하고 소관부처와 연구현장을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전문기관이 국가 기술혁신의 중심주체로서 국가R&D사업 투자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토록 하고자 함
- 다만, 부처별 R&D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행과 같은 부처별 전문기관 분산 운영체계 유지를 전제로 추진함

## 2. 현 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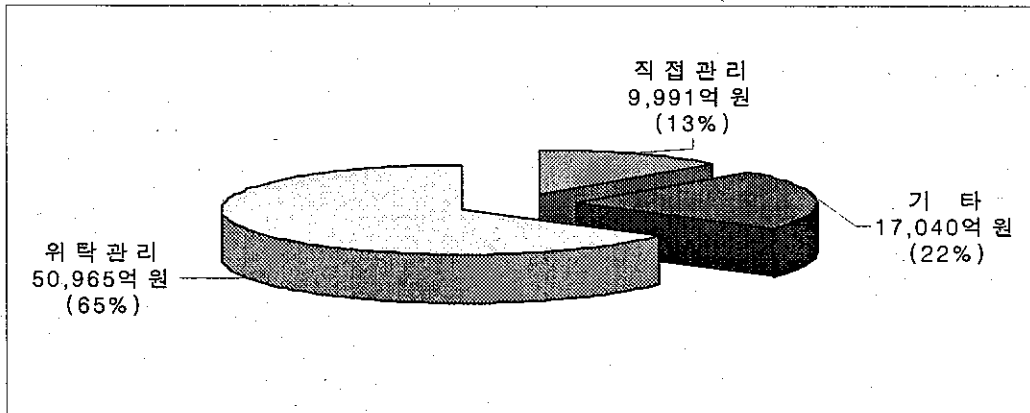
□ 부처별 국가R&D사업 관리형태는 행정기관(국공립(연) 포함)이 기획·평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직접관리', 산하기관 등에 업무수행을 위탁하는 '위탁관리' 및 '기타\*'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음(별첨 참조)

\* 교육공무원 인건비, 국공립(연) 및 출연(연)의 경직성 경비 등 별도의 체계적인 기획·평가·관리업무 수행이 불필요한 사업

○ '05년 정부R&D예산(77,996억원) 기준으로 직접관리는 약 13%, 위탁관리는 약 65% 수준임

### 【 국가R&D사업 관리유형별 분류 】

( '05.12월 기준 )



□ 12개 부처(청) 산하에 31개 기관이 국가R&D사업 기획·평가·관리업무를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

□ 이들 위탁관리기관(사업단 포함)중 전문기관\*은 9개 부처 산하 10개 기관이 설립 또는 지정되어 운영중임

\* 소관부처 R&D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토록 설립 또는 지정된 기관으로서 법령(행정규칙 포함)등에 설립·지정 및 업무위탁의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

### 【 부처별 위탁관리기관 현황 】

(’05.12월 기준)

소관부처	위탁관리기관 <sup>주1)</sup>	소관부처	위탁관리기관
교육인적자원부	한국학술진흥재단	산업자원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재단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력공사 전자부품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과학기술부	한국과학재단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프런티어사업단		
국방부 <sup>주2)</sup>	국방과학연구소		
문화관광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농림부	농림기술관리센터 한국농촌공사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프런티어사업단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소 방 방 재 청	-
환경부	한국환경기술진흥원 프런티어사업단	문 화 재 청	-
건설교통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농 촌 진 흥 청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기술관리센터 <sup>주3)</sup> 한국해양연구원	산 립 청	-
		중 소 기 업 청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식품의약품안전청	-
		기 타 <sup>주4)</sup>	-

주1) 사업단 포함

주2) ’06.5월 현재 방위사업청으로 업무이관

주3) ’06.5월 현재 해양수산기술진흥원으로 관리업무 이관

주4) 국무조정실 등 국가R&D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12개 부처(청)

### 【 부처별 전문기관 현황 】

(’05.12월 기준)

소관부처	전문기관	설립·운영근거	설립시기
교육인적자원부	한국학술진흥재단	학술진흥 및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1981. 4
과학기술부	한국과학재단	한국과학재단법	1997. 5
농림부	농림기술관리센터	농업·농촌기본법	1995. 9
산업자원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1999. 3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이용합리화법	1988. 8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정보화촉진기본법	1999. 1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1992. 2
환경부	한국환경기술진흥원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2000. 9
건설교통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건설기술관리법	2002.12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기술관리센터 <sup>주)</sup>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1997. 4

주) ’06.5월 현재 해양수산기술진흥원으로 관리업무 이관

□ 10개 전문기관들이 관리하는 국가R&D사업규모는 '05년 기준 약 4조3천억원으로, 소관부처 R&D예산의 약 72%에 해당함

※ 정부R&D예산(77,996억원)을 기준으로 10개 전문기관의 관리사업 규모는 약 55%

○ 전문기관에서 국가R&D사업의 기획·평가·관리업무 등을 수행하는 인원은 '05년 기준 총 714명으로 1인당 관리사업 규모는 약 60억원임

**【 전문기관별 국가R&D사업 관리 현황 】**

( '05.12월 기준 )

소관부처	'05년 R&D투자(A) (억원)	전문기관	인력 <sup>주1)</sup> (명)	관리사업 규모(B) (억원)	비율 (B/A) (%)
교육인적자원부	8,778	한국학술진흥재단	103	3,304	38
과 학 기 술 부	19,609	한국과학재단	140	11,679	59
농 립 부	694	농림기술관리센터	16	450	65
산 업 자 원 부	17,673	한국산업기술평가원	105	15,581	88
		에너지관리공단	53	1,456	8
정 보 통 신 부	6,972	정보통신연구진흥원	166	6,776	97
보 건 복 지 부	1,656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5	1,098	66
환 경 부	1,340	한국환경기술진흥원	38	886	66
건 설 교 통 부	1,519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58	1,460	96
해 양 수 산 부	1,406	해양수산기술관리센터 <sup>주2)</sup>	10	64	5
합 계	59,647	-	714	42,754	72

주1) R&D사업 기획·평가·관리업무 담당 인원 기준

주2) '06.5월 현재 해양수산기술진흥원으로 관리업무 이관

### 3. 문제점

#### □ 전문적인 R&D사업 기획·평가·관리기관으로서의 위상 측면

- 전문기관의 범위설정을 위한 정의 규정이 명확하지 아니하며, 전문기관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범부처 공동의 규정이 없어 부처별로 다수의 전문기관 설립에 따른 비효율이 우려됨

- 현행 정의 규정에 의하면 12개 부처 산하 31개 위탁관리 기관이 전문기관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나, 이들 중 다수는 R&D사업 기획·평가·관리를 위한 전문역량이 부족한 실정임

-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R&D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 또는 지정한 기관(「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 전문기관을 소관부처의 단순업무 지원기관으로 인식하여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R&D사업 기획·평가·관리기관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부처차원의 지원이 미흡한 실정임

- ※ 소관부처와의 명확한 역할분담이 미흡하며, 다수기관이 기술기획이나 정책적인 기능보다 평가지원, 연구비관리 등 단순관리업무에 치중

#### □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인력 측면

- R&D사업 기획·평가·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이 부족하여 업무수행의 전문역량 제고에 한계가 있음

- 주요 선진국은 매년 연구개발사업비의 약 3~5%를 '연구기획 평가비'로 사용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1~2%에 불과함

### 【 주요 전문기관의 연구기획평가비 국제간 비교 】

(단위: 백만원)

구분		연구개발비(A)	연구기획평가비(B)	비율(B/A)	
한국	한국과학재단	특정연구개발사업	419,601	5,964	1.4%
		원자력연구개발사업	197,345	1,880	1.0%
		과학기술국제화사업	43,056	830	1.9%
		기초과학연구사업	192,095	3,216	1.7%
	산업기술평가원	산업기술개발사업	640,750	8,864	1.4%
		기반조성사업	192,400	2,670	1.4%
		지역사업	564,300	7,344	1.3%
		중기혁신사업	160,700	2,040	1.3%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정보통신진흥기금사업	677,638	4,547	0.7%	
미국	국립과학재단(NSF)	기초과학연구사업	56억달러	2.5억달러	4.5%
	미국보건원(NIH)	보건연구개발사업	198억달러	7.2억달러	3.6%
영국	공학자연과학연구회(EPSC)	기초과학연구사업	478백만파운드	17.2백만파운드	3.6%

주) 한국('05년 예산기준), 미국('05~'06년 예산기준), 영국('04~'05년 예산기준)

- 연구기획평가비 중 대부분은 평가관리 및 평가지원에 사용되어 연구기획 및 연구성과 관리·활용과 관련된 예산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임

※ 과학재단의 경우 기획 및 연구성과 관리·활용 관련 예산은 총 연구기획평가비의 8.8%, 산업기술평가원의 경우 1.4% 수준임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업비의 규모에 비해 전문인력 충원이 미흡하며, 대부분 전문기관의 인력구조가 평가관리, 정산업무 등 단순지원업무에 집중됨

※ 과학재단의 경우 '04년 사업비 5,738억원을 107명이 관리하였으나, '05년에는 140명이 11,679억원을 관리하여 1인당 관리규모가 53억원에서 83억원으로 57%증가

## □ 연구성과정보의 체계적 관리 측면

- 전문기관별 관리대상 성과항목과 관리시스템이 상이하여 연구성과정보의 전문기관간 공유·활용이 미흡하고 통계 정보 위주의 관리로 정보의 유용성이 낮은 실정임

※ 국가차원에서 연구성과정보의 효율적 관리가 어려우며, 기술수요자 등에 대한 활용가치 및 접근성이 낮음

### 【 전문기관별 관리대상 성과항목 현황 】

(’06.5월 기준)

전문기관	보고서	사업화	인력양성	국제화협력성과	경제사회파급효과	기술이전	연구기자재
한국학술진흥재단	○	○	○	○	○	×	×
한국과학재단	○	○	○	○	×	×	○
농림기술관리센터	○	○	○	×	○	○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	○	○	○	○	○	○
에너지관리공단	○	○	○	×	○	○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	○	○	○	○	○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	○	○	○	○	○
한국환경기술진흥원	○	○	○	○	○	○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	○	×	×	○	○	×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	○	○	×	×	○	○	×

### □ 평가인력 활용의 효율성·투명성 측면

○ 국가R&D사업의 질적·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이 활용하고 있는 전문성을 갖춘 평가인력이 부족하여 평가의 공정성·전문성에 대한 일선 연구현장의 만족도가 높지 않음

※ 혁신본부에서 일선 연구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05.10) 결과 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만족도가 보통으로 나타났으며(42%), 평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서는 기술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평가인력 풀 확대가 시급히 요구된다고 응답(49%)

○ 전문기관별로 평가인력 관리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공동 활용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여 평가인력 활용의 효율성이 낮은 실정임

- 소관 R&D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기술분야별로 평가인력을 분류하여 전문기관별로 D/B를 구축·운영 중임

※ 현재 전문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평가인력 풀은 총 75,308명(중복포함)이나 과학재단과 학술진흥재단만이 D/B를 공유

### 【 전문기관별 평가인력 풀 현황 】

('06.5월 기준, 단위: 명)

전문기관	구분				
	산업계	대학	출연(연)	기타	합계
한국학술진흥재단	0	30,558	1,478	120	32,156
한국과학재단	1,605	6,461	2,090	158	10,314
농림기술관리센터	122	1,347	161	341	1,971
한국산업기술평가원	1,713	1,403	623	255	3,994
에너지관리공단	610	678	526	194	2,008
정보통신연구진흥원	1,693	4,050	935	194	6,872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354	6,365	783	82	8,584
한국환경기술진흥원	1,472	2,224	895	88	4,679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1,002	1,170	501	1	2,674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	308	1,147	223	378	2,056
합계	9,879	55,403	8,215	1,811	75,308

- 평가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관리와 관련 정보의 전문 기관간 상호 연계·공유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전체적인 평가인력 활용의 효율성이 낮은 실정임

※ 평가인력의 기본적인 인적사항 외에 국가R&D사업 평가 참여경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전문기관은 5개 기관

**【 전문기관별 평가인력 관리 정보 현황 】**

(’06.5월 기준)

전문기관	인적사항	전문 기술분야	참여경력
한국학술진흥재단	○	○	○
한국과학재단	○	○	×
농림기술관리센터	○	○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	○	○
에너지관리공단	○	○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	○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	○
한국환경기술진흥원	○	○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	○	×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	○	○	×

**□ 전문기관에 대한 기관평가제도 측면**

- 전문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는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과학기술기본법」,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수행함

- 전문기관에 대한 기관평가가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실시됨에 따라 일부 전문기관은 기관평가를 중복하여 받거나 기관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도 존재함

### 【 전문기관에 대한 기관평가 현황 】

(’06.5월 기준)

전문기관	기관평가 근거법령	평가주관기관
한국학술진흥재단	■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기획예산처
한국과학재단	■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 과학기술기본법	기획예산처 과학기술부
농림기술관리센터 <sup>주1)</sup>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 법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산업기술평가원	■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기획예산처
에너지관리공단	■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기획예산처
정보통신연구진흥원	■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기획예산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기획예산처
한국환경기술진흥원 <sup>주2)</sup>	-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기획예산처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 <sup>주2)</sup>	-	-

주1) 부설기관으로서 본원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평가에 포함

주2) 정관에 의하여 자체경영실적 평가 후 이사회에 보고

- 기능 및 역할이 상이한 기관들과 평가기준·평가지표 등의 차별화가 미흡하여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고유기능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평가가 어려움

※ ’06년 기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적용대상은 93개 기관이며 전문기관은 7개 기관

## □ 연구관리행정의 고객 지향성 측면

- 전문기관별로 국가R&D사업 관련 정보를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부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 현행 국가R&D사업통합공고시스템(RNDALL)은 부처별 R&D 사업 관련 정보를 낱짜별로 나열하여 게시하는 방식으로 공급자 위주로 제공되고 있음
  - 전문기관별로 사업설명회를 부정기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개최하여 수요자에 대한 접근성이 낮음
- 전문기관별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상호 연계성이 취약하여 연구자 등이 동일정보를 반복하여 전산입력하고, 행정서류 등을 중복하여 제출하는 불편이 있음

## II. 연구관리전문기관 운영효율화 추진

###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 기본방향

부처별 R&D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행 부처별 분산 운영 체계를 유지하되

1

국가기술혁신의 중심주체로서의 위상 재정립

2

R&D사업 기획·평가·관리업무 수행의 역량 제고

3

연구현장의 편익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연구관리행정 개선

4

R&D사업 기획·평가·관리능력 검증제도 도입

#### 추진목표

국가R&D사업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반조성

## 2. 세부 추진과제

### 1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위상 재정립

#### 【추진내용】

- 전문기관에 대한 명확한 범위설정을 위한 정의규정을 마련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반영함
  - ※ 규정(안) : 제2조(용어의 정의) 전문기관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업무의 위탁수행을 주된 업무로 하도록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 또는 지정한 기관
- 전문기관의 설립·지정시 그 필요성 등에 관하여 과기장관 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설립·지정에 관한 절차를 마련함
  - \* 신규 전문기관의 설립·지정시에는 타 부처 및 기존 전문기관의 기능 및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규정」에 관련 내용 반영 추진
- 전문기관 이사회 구성 시 혁신본부 관계자가 당연직 이사로 참여토록 함으로써 국가기술혁신 방향에 부합하도록 전문기관 운영을 도모함
  - ※ 현재 10개 전문기관 중 산업기술평가원, 환경기술진흥원, 해양수산기술진흥원 등 3개 기관에만 기술혁신평가국장, 에너지환경심의관, 생명해양심의관이 각각 참여 중
- 장기적으로는 국가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전문기관을 운영하기 위해 전문기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지원에 관한 단일 법률의 제정을 검토함

**【 전문기관별 이사회 구성현황 】**

(’06.5월 기준)

전문기관	관련 규정	이사회 참여 부처
한국학술진흥재단	· 학술진흥 및 학자금 대출 신용 보증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 정관 제5조 및 제17조	교육인적자원부 과 학 기 술 부 기 획 예 산 처
한국과학재단	· 한국과학재단법 제4조 · 정관 제13조 및 제20조	교육인적자원부 과 학 기 술 부 기 획 예 산 처
농림기술관리센터	-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 정관 제14조 및 제23조	혁 신 본 부 산 업 자 원 부 기 획 예 산 처 중 소 기 업 청
에너지관리공단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65조 · 정관 제14조 및 제26조	산 업 자 원 부
정보통신연구진흥원	· 정관 제13조 및 제21조	정 보 통 신 부 기 획 예 산 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제7조 · 정관 제16조 및 제30조	보 건 복 지 부
한국환경기술진흥원	· 정관 제14조 및 제23조	혁 신 본 부 환 경 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 정관 제14조 및 제24조	건 설 교 통 부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	· 정관 제14조	혁 신 본 부 해 양 수 산 부

**【추진일정】**

- 관련 규정(안) 및 제도개선(안) 마련(’06.12) : 혁신본부
- 전문기관별 정관 개정(안) 마련(’06.10) : 주관부처 및 전문기관

## □ 기능 및 역할에 부합되는 적정규모 연구기획평가비 및 전문인력의 확보

### 【추진내용】

- 부처별 소관 전문기관의 기능 및 역할 등을 검토하여 적정 규모의 연구기획평가비\* 및 전문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함

\* 10개 전문기관의 연구기획평가비는 약 530억원('05년기준)으로 연구개발사업비의 약 1.2% 수준

- 평가지원 위주에서 벗어나 기획 및 연구성과 관리 부분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적정규모 연구기획평가비를 확보함
- 연구기획평가사 활용, 출연(연) 등 관련 기관 경력직 인력 채용 확대 등을 통한 적정규모 전문인력을 확보함

### 【추진일정】

- 연구기획평가비 및 전문인력 확보 방안(안) 마련('06.12) : 주관부처 및 전문기관

## □ 평가인력 통합관리시스템(EMS) 구축

### 【추진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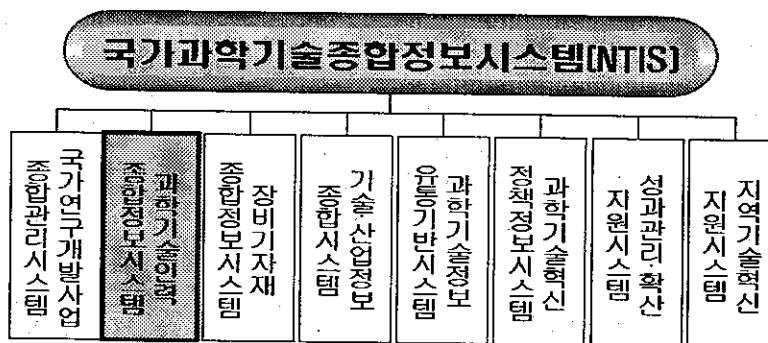
- 전문기관별 평가인력을 표준기술분야별로 재편하고 관련 정보입력 양식을 표준화하여 평가인력 D/B를 상호 연계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함

※ 과기부장관은 평가위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평가 위원후보단을 구성·관리하여야 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

-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전문기관간 평가인력의 공동 활용과 함께 평가인력의 국가R&D사업 평가 참여경력 등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함

### 【추진일정】

- 세부시행계획 마련('06.10) : 혁신본부



- 평가인력 관리양식 및 D/B 표준화 추진('06.12) : 주관부처 및 전문기관

※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 추진

## □ 연구성과 관리의 표준화 및 성과관련 정보의 공유촉진

### 【추진내용】

- 연구성과의 형태에 따라 기록물, 성과물, 성과활용, 인력양성, 교류협력 등으로, 관리범위에 따라 정보항목, 통계항목 등으로 구분하여 **표준성과항목을 마련함**
  - ※ 중요도에 따라 전문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관리할 공통성과항목과 전문기관별로 선택적으로 관리할 개별성과항목으로 분류
- 연구성과의 유형별로 **표준화된 관리양식을 마련하여, 전문기관간 성과관련 정보의 호환성을 제고함**
- 연구성과에 대한 기술수요자 등의 접근성 및 활용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과제단위로 **연구성과 정보를 요약하여 공개하기 위한 표준양식을 마련함**

### 【추진일정】

- 연구성과관리·활용 기본계획('06~'10)\*에 의거하여 세부 시행계획 마련('06.10) : 혁신본부
  -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 성과관리체계 표준화 및 관련 정보 공유체계 구축 추진 ('06.12) : 주관부처 및 전문기관
  - ※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 추진

## □ 전문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기관평가 지표개발

### 【추진내용】

- 전문기관의 R&D사업 기획·평가·관리업무 수행기능을 평가하기에 적합한 기관평가 지표를 개발하여 활용함
  -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주요사업 부문)시 반영 추진
    - ※ 한국학술진흥재단 등 7개 기관 대상
-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상의 기관평가에서 제외되는 3개 전문기관에 대해서는 부처별로 전문기관의 임무 및 기능에 대한 자체평가 시행계획 및 관련 제도 정비 등을 검토함
  - ※ 농림기술관리센터, 한국환경기술진흥원,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 등 3개 기관 대상

### 【추진일정】

-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전문기관 특성을 반영한 기관평가 지표개발('06.12) : 혁신본부
  - ※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지 반영 : 기획예산처
- 자체평가 시행계획 및 관련 제도 정비(안) 마련('06.12): 해당부처

## □ 전문기관간 상호 협력 및 연계체계 강화

### 【추진내용】

- 전문기관 운영효율화를 위한 기관차원의 노력을 결집하여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고, 기관간 상호 협력·연계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실효성있는 전문기관간 협의체를 구성함**

- ※ R&D사업 기획·평가·관리업무 수행 관련 교육프로그램 공동 개발·운영, 해외 전문기관 사례 공동연구, 관련 공동 세미나 개최, R&D사업 관련 정보의 연계·공유 촉진을 위한 상호협력, 전문기관 운영전반에 대한 고객 요구사항 접수·처리 등의 임무수행

- 협의체 활동에 대한 구속력 강화를 위해 **전문기관 협의체 공동 운영규정을 마련함**

- ※ 협의체의 구성범위, 기능 및 역할 등을 명시

- 과학기술부 종합조정지원사업으로 관련 예산 지원 추진

### 【추진일정】

- 전문기관 협의체 구성·운영(안) 마련('06.10) : 혁신본부

- ※ 전문기관 등이 참여하는 TFT 구성·운영('06.6~8)

- 전문기관 협의체 공동 운영규정 마련('06.12) : 주관부처 및 전문기관

### 3 연구관리전문기관의 고객 지향성 강화

#### □ 국가R&D사업 종합안내서 발간 및 합동설명회 개최

##### 【추진내용】

- 국가R&D사업을 주요 관심대상별, 지원금액별, 사업기간별 등 수요자 중심으로 분류하여 종합안내서를 발간함

- 이와 병행하여 통합공고시스템을 수요자 위주로 개편, 수요자가 검색조건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사업을 검색하고 사업관련 내용을 충분히 획득할 수 있도록 함

※ 주관기관, 연간 지원규모, 지원목적, 개발기간, 공모시기 등

- 국가R&D사업을 대학, 출연(연), 민간기업 등 수요자별로 구분하고 관련 전문기관의 공동주관으로 정례적인 국가 R&D사업 합동설명회를 개최함

※ 필요시 기술분야별로 분류하여 합동설명회 개최

##### 【추진일정】

- 세부시행계획 마련('06.10) : 혁신본부
- 혁신본부에서 마련한 표준 양식에 따라 부처별 국가R&D사업 추진정보 제출('06.10~12) : 주관부처
- 국가R&D사업 합동설명회 개최계획 수립('06.12) : 혁신본부
- 국가R&D사업 종합 안내서 발간('07.1) : 혁신본부

## □ 일반정보 사전등록 및 공동관리제 도입

### 【추진내용】

- 연구자 등의 일반정보(사업자 등록증, 통장사본 등)를 사전등록 및 전문기관간 상호 연계하여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자 또는 연구기관담당자가 사업별 또는 기관별로 신규입력 또는 수정을 반복하는 불편을 해소함

※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관리

- 연구자 등의 최신정보 등록 및 수정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정보관리·활용의 실효성을 제고함

※ 규정(안) : 제4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공고 및 신청) ⑤ 제4항에 의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인력종합정보시스템에 인적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등록·수정한 후 인증을 받아야 한다

### 【추진일정】

- 세부시행계획 마련('06.10) : 혁신본부
- 일반정보 사전등록 및 공동관리체계 구축 추진('06.12) : 주관부처 및 전문기관

※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 추진

## □ 전자협약제도 확대 실시

### 【추진내용】

- 전문기관의 연구관리시스템에 전자협약서를 포함시켜 연구 과제 선정통보 후 협약체결 요건이 구비된 경우 연구기관과 연구책임자가 전자서명토록 함
  - ※ 현재 과학재단, 학술진흥재단에서 실시 중이며, 통상 10일 정도의 서류협약 소요시간 및 서류제출 노력을 경감시키는 효과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개정을 통하여 전자협약 체결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함
  - ※ 규정(안) : 제7조(협약의 체결)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전자서명법」의 규정에 따른 전자서명 등의 방법으로 사용한 전자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추진일정】

- 관련 규정 개정(안) 마련('06.10) : 혁신본부
- 전문기관별 전자협약제도 시범실시('07년 상반기) : 주관부처 및 전문기관

## 4 R&D사업 관리능력 검증제도 도입

### 【추진내용】

- 국가R&D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R&D사업 기획·평가·관리업무 수행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
  - 부처별 R&D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획·평가·관리 분야별 세분화된 능력검증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함
  - 부처별 소관 R&D사업의 기획·평가·관리업무를 위탁할 경우 부처 또는 부처가 지정하는 기관에 의해 검증될 경우에만 한하여 위탁하도록 추진함
  - 이를 통하여 전문역량을 구비한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국가 R&D사업 관리체계를 재편함

### 【추진일정】

- 관련 규정 개정(안) 마련('06.12) : 혁신본부
  -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개정 시 반영 추진
- 국가R&D사업 기획·평가·관리업무 수행기관에 대한 능력 검증기준 및 세부시행계획 마련('06.12) : 주관부처

### III. 향후 추진계획

세부추진과제	주체	2006						2007		
		6	7	8	9	10	11	12	1	2
<b>전문기관의 위상 재정립</b> · 관련 규정(안) 및 제도개선(안) 마련 · 전문기관별 정관 개정(안) 마련	혁신본부 주관부처	→						→		
<b>적정규모 연구기획평가비 및 전문인력 확보</b> · 확보 방안(안) 마련	주관부처	→						→		
<b>평가인력 통합관리시스템 구축</b> · 세부시행계획 마련 · 시행	혁신본부 주관부처	→						→		
<b>성과관리 표준화 및 정보 공유 촉진</b> · 세부시행계획 마련 · 시행	혁신본부 주관부처	→						→		
<b>전문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기관평가 지표개발</b> · 평가지표 개발 · 자체평가 시행계획 등 마련	혁신본부 해당부처	→						→		
<b>상호 협력 및 연계체계 강화</b> · 협의체 구성·운영(안) 마련 · 협의체 공동 운영규정(안) 마련	혁신본부 주관부처	→						→		
<b>종합안내서 발간 및 합동설명회</b> · 세부시행계획 마련 · 부처별 R&D사업 정보 제출 · 합동설명회 개최계획 수립 · 종합안내서 발간	혁신본부 주관부처 혁신본부 혁신본부	→						→		
<b>일반정보 사전등록 및 공동관리제</b> · 세부시행계획 마련 · 시행	혁신본부 주관부처	→						→		
<b>전자협약제도 확대 실시</b> · 관련 규정 개정(안) 마련 · 시범실시	주관부처 주관부처	→						→		
<b>R&amp;D사업 관리능력 검증제도 도입</b> · 관련 규정 개정(안) 마련 · 검증기준 및 세부시행계획 마련	혁신본부 주관부처	→						→		

**【별첨】**

**국가R&D사업 관리유형별 분류**

(’05.12월 기준, 단위: 억원)

부처(청)	’05년 정부R&D예산	직접관리	위탁관리	기타
교육인적자원부	8,778	2,268	3,155	3,355
과학기술부	19,609	267	12,038	7,304
국 방 부	9,293	2,482	5,412	1,399
문화관광부	157	9	95	53
농 립 부	694	62	466	166
산업자원부	17,673	99	17,120	454
정보통신부	6,972	0	6,883	89
보건복지부	1,656	138	1,087	431
환 경 부	1,340	10	913	417
건설교통부	1,519	29	1,490	0
해양수산부	1,406	384	413	609
기 상 청	209	131	0	78
소방방재청	43	25	0	18
문화재청	140	68	0	72
농촌진흥청	3,044	2,963	0	81
산 립 청	416	201	0	215
중소기업청	2,317	421	1,893	3
식품의약품안전청	445	355	0	90
국무조정실	2,206	0	0	2,206
기타	79	79	0	0
<b>합계</b>	<b>77,996</b>	<b>9,991</b>	<b>50,965</b>	<b>17,040</b>
<b>비율(%)</b>	<b>100</b>	<b>12.8</b>	<b>65.3</b>	<b>21.9</b>